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3
----------	------

발의년월일 : 2016. 11. 16 .

발 의 자 : 유하 의원 등 10명

1. 제안이유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인성에 대한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인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췌서 등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6.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16. 11. 8. ~ 2016. 11. 14.

7. 기타 참고사항 : 집행부 검토의견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